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1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10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시립대 특수대학원 ‘도시보건대학원’ 설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, 시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대학원) 3호 특수대학원에 “도시보건대학원” 추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보건의료기본법」,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행정규제 신설·강화 없음
- (2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): 평가 제외 대상임
- 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아님(미첨부 사유서 첨부)
- 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 제외 대상임
- (5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: 평가 제외 법령임

(6) 갈등조정담당관(갈등영향분석평가): 갈등 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
실·본국·국 협의 사항: 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17. 8. 10. ~ 8. 30.) 결과: 제출 의견 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붙임

※ 작성자 : 조직담당관 시정연구팀 설정환 (☎ 2133 - 6747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3호 “국제도시과학대학원” 다음에 “도시보건대학원”을 추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대학원) 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학원을 두며,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일반 대학원 2.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전문 대학원으로 세무전문대학원, 디자인전문대학원, 법학전문대학원 3. 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의 특수 대학원으로 도시과학대학원, 경영대학원, 과학기술대학원, 교육대학원, 국제도시과학대학원 	<p>제5조(대학원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, 국 제도시과학대학원, <u>도시보건대학원</u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(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1. 비용발생 요인 : 보건대학원 설치 및 운영

□ 소요예산 : 연간 약 312,000천원

○ 전임·초빙교수 : 3~5명 × 73,000천원 = 292,000천원

※ 1인당 급여(73,000천원) 책정 : 4년제 대학교원 급여현황 중 '평균 부교수 연봉' 수준

○ 행정인력 : 1명 × 20,000천원 = 20,000천원

※ 겸임교수 : 예산 추가 부담 없음

▶ 예산 확보 방안

- 등록금으로 최대한 충당하되, 부족분은 市 예산 지원 필요(연간 약 120,000천원)

▶ 등록금

2018년 : 30명 × 2학기 × 3,200천원 = 192,000천원

2019년~ : 60명 × 2학기 × 3,200천원 = 384,000천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예상되는 비용 추계액이 연평균 5억원 미만으로 추정

4.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설정환(2133-6747)